

예산총칙

2022년도 추경2회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세입 · 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계	948,077,000	28,442,310
일반회계	923,500,000	27,705,000
일반회계	923,500,000	27,705,000
특별회계	24,577,000	737,310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,600,000	48,000
지하수관리특별회계	347,000	10,410
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특별회계	11,439,000	343,170
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	145,000	4,350
주차장특별회계	11,046,000	331,38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예산 사업명세서"와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,970,940천원으로 한다.

(일반예비비 5,424,758천원, 목적예비비 4,546,182천원)

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2,7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